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료 공영주차장 무단장기주차 금지의무 신설 및
지자체장의 주차질서 위반행위 정기점검 의무화 등 〉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88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중 수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278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무료 공영주차장 무단장기주차 금지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2호 신설)	2
2. 무단장기주차 주차기간 요건 강화(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등)	10
3. 지자체장의 주차질서 위반행위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14
※ 참고자료	19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1278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9. 8.
3. 회 부 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무료 공영주차장 무단장기주차 금지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2호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생략) <u><신설></u>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u> 2. <u>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u>

1) 이하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의미

제3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 ~ 4. (생략) ④ (생략)	<u>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u>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6조의3제1항을----- ----- ----- 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한 자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난 2024년 1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이하 “무단장기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동명령·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8조의2제1항제6호·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 신설²⁾)가 마련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2)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

그런데 이와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 지자체에서³⁾ 견인 담당부서 부재,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의 사유로 무단장기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 카, 트레일러 등을 장기주차하여 주차공간 부족, 주차선 침범 등 일반 주차장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9.>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3) 부산 연제구, 인천 동·중·연수구, 대구 동·북·중·달서구, 대전 중·대덕구, 울산 남·동·북구, 용인, 남양주, 안양, 아산, 당진, 양산, 춘천, 원주 등(자료 : 국토교통부)

4) “화물차에 트레일러까지…장기 방치 차량에 몸살앓는 공영주차장”(2025.2.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4144500053>), “‘알박기’에 장기 방치까지…‘암체 차박족’에 칼 빼든 지자체”(2024.8.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0105700052>), “공영 주차장 점령한 장기 방치 차량…법 바뀌어도 개선은 ‘느릿’”(2024. 8.16. KBS뉴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공영주차장에서 무단장기주차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강제권인 외에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단장기주차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 도입과 함께 제재를 강화하여 무단장기주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에서의 무단장기주차 금지의무 규정을 현행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문인 제6조의3에 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무단장기주차 금지 대상 공영주차장의 범위(현행 강제권인 대상 주차장⁵⁾과 동일)에는 현행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이나 개방주차장⁶⁾인 부설주차장은 제외되어 있어, 금지행위에 따라 규제 대상 공영주차장의 범위에 차이가 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36536&ref=A>)

- 5)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모든 노상주차장은 지자체장이 설치),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대부분 지자체장이 설치),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근거 : 현행법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

6)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및 적용 대상 주차장 >

구분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영주차장
현행	야영행위,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국가기관, 지자체, <u>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u> 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개정안	무단장기주차 행위	지자체장이 설치한 무료의 노상·노외주차장,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이나 개방주차장인 공영 부설주차장도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무단장기주차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주차장도 무단장기주차 금지, 과태료 부과 및 강제전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고정적으로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고정 주차’를 무단장기주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 내에서 주차단위구획⁷⁾을 이동하며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지가 없도록 ‘고정’주차 요건을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고정’주차 요건은 현행 지자체장의 이동명령 및 강제전인의 대상이 되는 무단장기주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도 ‘고정’주차 요건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주차장법」 제2조제7호)

셋째, 안 제6조의3제2항 본문 단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⁸⁾를 무단장기주차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가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단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안 제30조제3항제2호에서는 무단장기주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수준과 동일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그런데, 무단장기주차 방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태료 수준을 일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준¹⁰⁾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수준(50만원 이하)을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경찰용 자동차로 범죄수사, 교통단속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국군 및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 질서 유지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9)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10) 부산광역시 1급지(나) 240,000원/월, 광주광역시 1급지 230,000원/월, 대전광역시 1급지 240,000원/월 (자료: 국토교통부)

다섯째, 개정안은 무단장기주차 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시행 당시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도 적용할 것인지, 주차 중인 차량에 대해 적용할 경우에도 주차기간 산정을 시행일부터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¹¹⁾.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 무단장기주차 금지 대상 주차장을 국가, 지자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제재가 곤란하므로 장기주차 기준을 주차장 기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수준을 1백만원 이하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11) 참고로, 무단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2024.1.9.) 시 부칙에서는 법 시행 당시 주차 중인 자동차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었음.

부칙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제2조(주차장 관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고정하여 주차 중인 자동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서울특별시

장기간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과태료 부과로만 끝나거나 과태료를 내고 계속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처분(경고·계도→과태료부과→견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필요함.

2. 무단장기주차 주차기간 요건 강화(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등)

가. 검토의견

무단장기주차 행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강제견인되지 않는 최장 주차기간을 한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임. 이하 같음) 이내의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안 제8조의2제1항제6호·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6. ----- ----- <u>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u> ----- ----- -----

제15조(관리방법)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 3. (생략)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2. (생략)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5조(관리방법)

②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

1. ~ 3. (현행과 같음)
4. -----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③ -----

-----.

- 1.·2. (현행과 같음)
3. -----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강제견인되지 않는 최장 주차기간을 1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한도를 정함으로써 무단장기주차 행위의 주차기간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인데, 현행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강제견인되지 않는 최장 주차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¹²⁾ 개정안에 따라 무단장기주차 행위의 주차기간 요건이 강화되는 것은 아님.

다만,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시행령에서 그 기간을 현행 1개월보다 길게 개정할 수 없는 법적 효과가 생기므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단장기주차 행위의 주차기간 요건을 더 완화할 수 없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주차장법」(현행)	「주차장법」(개정안)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여서는 ~ (안 제6조의3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현행)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3조, 제5조, 제11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개월보다 길게 개정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최대 1개월(차량 운행 불가 상태인 경우 15일)까지 정할 수 있으므로 더 길게 개정할 수 없음.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따라서, 무단장기주차 행위의 주차기간 요건에 관한 위임범위를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것인지, 한도를 정할 경우 그 한도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나. 국토교통부 의견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지자체장의 주차질서 위반행위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주차장에서 정해진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주차하는 등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서 제한되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 제15조제2항 각 호 및 제19조의3제3항 각 호의 행위(이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안 15조제2항, 안 제19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 ----- ----- ----- ----- ----- ----- -----.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1. ~ 5.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	

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신설>

제15조(관리방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

6. -----
-----1개월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행위 제한 사항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1. ~ 3. (현행과 같음)

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
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
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생략)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
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
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
하는 경우

④ (생략)

<신 설>

4. -----
-----1개월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
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주차행위 제한 사항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에서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주차방법 변경 명령, 차량이동 명령, 견인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1. 참조)

그런데, 최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량 방치, 무단장기주차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제도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지자체장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로 행정기관의 점검이 강화되면 주차질서 개선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봄.

다만, 지자체마다 주차질서의 수준, 위반행위나 피해의 심각성 등 여건이 달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지자체별 여건이 상이하므로 법령에 정기적 단속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함¹³⁾.

2) 안양시

주차행위 제한 사항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신설을 반대함.

문 의 처
02)6788-5584

13)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지자체 정기점검 규정 신설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25.7.1~8.30)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광역지자체가 반대의견 제출

참고1

현행 「주차장법」 상 주차질서 위반행위 및 행정조치 요약

구분		주차질서 위반행위	행정조치
노상 주차장	근거	법 제8조의2제1항, 시행령 제3조	제8조의2제1항~제3항
	내용	1. 화물주차구획에 주차 2.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3. 주차시간 제한 등 위반하여 주차 4. 지정주차구획 외 주차 5.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 6. 무료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	- 차량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1. 주차방법 변경 명령 또는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 - 차량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2.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3.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에게 통보,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노외 주차장	근거	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5조	제15조제2항
	내용	1.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2.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 3. 지정 주차구획 외에 주차 4. 무료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	- 차량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1.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2.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에게 통보,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부설 주차장	근거	법 제19조3제3항, 시행령 제11조의3	제19조3제3항·제4항
	내용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 3. 공영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	- 차량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1. 주차방법 변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 2. 견인 및 보관 후 운전자에게 통보,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 후 매각, 폐차.

참고2**장기주차 차량 강제 조치 실적('24.7.10~'25.8월 말 기준)****□ 장기주차 차량 781대 강제 조치(견인)**

구분	강제조치건수	구분	강제조치건수
부산	4	경북	15
인천	47	경남	27
대구	11	전남	185
울산	1	강원	49
광주	6	전북	2
경기	44	제주	264
충북	9	합계	781
충남	117		

* (서울) 무료 공영주차장이 없음, (대전) 민간 견인대행업체 계약중, (세종) 관련 예산 부족, 캠핑카 주차장 확보 등으로 실적 무

자료 : 국토교통부